



농산물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25호

##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3. 11. 15.

#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강증진과장

## 1. 개정이유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수정 (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6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수정하여 표기

나. 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제5조제1항)

- 금연지도원 지도·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개정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안 제8조제1항)

-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최저임금 및 논산시 생활임금액을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감사실-11681호(2023.11.01.)】
- 2)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복지정책과-32458호(2023.10.30.)】
-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아님 【예산실-12202호(2023.10.18.)】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11. ~ 2023. 10. 30. (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041-746-2653)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건강증진과장	이혜란
	건강정책팀장	이규화
	담당자	정은비 (746-805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p> <p>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p>	<p>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p> <p>-----</p> <p>-----</p> <p>-----.</p> <p>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p> <p>① -----</p> <p>-----</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p> <p>----- 1년-----</p>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  
-----  
-----  
-----  
-----  
----- 1년  
-----  
-----.  
-----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  
-----  
-----  
-----  
-----영 제16조의5  
제1항제1호-----  
-----  
-----.  
-----  
-----.

<p>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u>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u> 다만, <u>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 ----- <u>활동수당을</u> ----- ----- ----. &lt;단서 삭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 8 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저임금 및 논산시 생활임금 매년 인상되는 점을 반영

나. 추계 결과

- (2023~2027년) 세출비용 : 285,1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 예산	
기타 보상금	<b>【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2023년기준)</b>					
	① 활동보상금					
	- 주간근무자 : 2명 × 42주 × 주4회 × 44,000원 = 14,784천원					
	- 야간근무자 : 4명 × 44주 × 주3회 × 66,000원 = 34,848천원					
	② 유류비					
	- 6명 × 12개월 × 40,000원 = 2,880천원					
	구분	대 상 자	예상 인원	산 출 기 초	금 액 (천 원)	285,120
	합계		<b>60명</b>		<b>285,120</b>	
	2023년	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2명	168회×2명×44,000원 =14,784,000원	52,512	
		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4명	132회×4명×66,000원 =34,848,000원		
금연지도원 교통비 수당		6명	12개월×6명×40,000원 =2,880,000원			
2024년	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2명	168회×2명×46,000원 =15,456,000원	54,768		
	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4명	132회×4명×69,000원 =36,432,000원			
	금연지도원 교통비 수당	6명	12개월×6명×40,000원 =2,880,000원			

	2025년	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2명	168회×2명×48,000원 =16,128,000원	57,024
		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4명	132회×4명×72,000원 =38,016,000원	
		금연지도원 교통비 수당	6명	12개월×6명×40,000원 =2,880,000원	
	2026년	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2명	168회×2명×50,000원 =16,800,000원	59,280
		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4명	132회×4명×75,000원 =39,600,000원	
		금연지도원 교통비 수당	6명	12개월×6명×40,000원 =2,880,000원	
	2027년	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2명	168회×2명×52,000원 =17,472,000원	61,536
		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 활동보상금	4명	132회×4명×78,000원 =41,184,000원	
		금연지도원 교통비 수당	6명	12개월×6명×40,000원 =2,880,000원	

\* 재원조달방안 : 국비(50%), 도비(15%), 시비(35%)

\*\* 2023년 논산시 생활임금 : 시급 10,840원

\*\*\* 활동보상금은 논산시 생활임금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 반영

### 3.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이 혜 란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52,512	54,768	57,024	59,280	61,536	285,120	
국 비	26,256	27,384	28,512	29,640	30,768	142,560	
도 비	7,877	8,215	8,554	8,892	9,230	42,768	
시 비	18,379	19,169	19,958	20,748	21,538	99,792	
세 출	52,512	54,768	57,024	59,280	61,536	285,120	
301 일반보전금 14 기타보상금							
○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 등	52,512	54,768	57,024	59,280	61,536	285,120	
재원 조달	52,512	54,768	57,024	59,280	61,536	285,120	
의존 재원	소 계	34,133	35,599	37,066	38,532	39,998	185,328
	보조금	34,133	35,599	37,066	38,532	39,998	185,328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379	19,169	19,958	20,748	21,538	99,792
	지방세	18,379	19,169	19,958	20,748	21,538	99,79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